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78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김영환 · 한준호 · 윤종균
정태호 · 김 윤 · 권칠승
복기왕 · 장철민 · 허 영
한민수 · 김태선 · 박 정
박용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야간 추심, 지인 변제요구 등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권추심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합성된 영상물 또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식의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종종 자행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정보유통 속도나 범위가 광범위하여 피해의 확산을 제어하기 어렵고, 채무자의 연체 정도에 비해 채무자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과도하다 할 것임.

현행법 제9조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채권

추심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채무자나 관계인의 신상을 합성한 영상물을 게재하는 행위 또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도모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호의2 신설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모멸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 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하여 유포·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제작·편집된 딥페이크영상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5조제1항 중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을 “제9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폭행 · 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 · 협박 등의 금지)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모멸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 가공한 촬영물 · 영상물 · 음성물을 제작 · 반포하는 행위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 · 편집하여 유포 · 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제작 · 편집된 딥페이크영상등</u>

2. ~ 7. (생략) 제15조(벌칙) ① <u>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u>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③ (생략)	<u>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u> 2. ~ 7. (현행과 같음) 제15조(벌칙) ① <u>제9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